

해외 송금 약관

① 홍콩상하이은행(이하 `은행')은 신청인으로부터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지급지시/송금수표를 은행의 지점 또는 거래은행(이하 `환거래은행') 앞으로 지시/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환거래 은행에 지급지시/송금수표에 관련된 지시 등을 함에 있어 통상어, 부호, 압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법령, 규칙, 제한 등의 규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
2. 환거래 은행의 착오, 부주의, 지급거절, 지급지연, 지급불능, 기타 은행이 지시한내용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
3. 지급지시/송금수표 발행 통지서의 전달 중에 발생하는 분실, 착오, 훼손, 지연, 불착, 그릇된 전달 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
4. 기타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손해

④ 신청인의 송금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은 외국환관리 관계법령, 규정 및 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 송금수표의 원본을 반환 받거나 지급지시에 의한 송금의 경우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⑤ 송금수표의 지급자금이 지급은행에 제공된 경우 은행은 송금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신청인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지급은행에 송금수표 액면금액의 지급을 유보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신청인은 우편료, 전신료, 기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이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입금하여야 합니다.